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4호 2013년 8월 pp.41~72
한국세무학회

소득과세의 공정성 평가와 합리적 증세방안에 대한 연구*

김광윤** · 심충진*** · 이영환****

<요 약>

정부는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을 검토하여 증세여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소득과세(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조세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의 공정성여부는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증세 여부는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을 통해 판단한다. 증세의 효과는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조세부담률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이상이 될 경우 납세자가 느끼는 세부담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조세부담률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부담의 증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담시킬 수 있는 분배방법으로 내국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을 기준으로 조세부담액을 안분한다. 조세부담률을 1%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는 약 5조 8,810억원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는 약 5조 8,520억원 증액되어야 한다.

둘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3,434억원이며, 고소득자의 세율만 조정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9,080억원이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모두 조정할 경우 증가되는 세수효과는 약 6조 7,946억원이다.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 10%를 축소할 경우 확보 가능한 세수는 1,668억원이다. 최선의 소득세 증세방법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두 조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법인세 증세 실천방안으로 법인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7조 4,922억원이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 방안을 모두 적용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6조 1,585억원이다. 세액공제 규모 중 10%를 축소할 경우 7,401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의 10%를 축소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세율 22% 적용시)는 약 60억원 정도로 낮다. 법인세 증세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조정이 필수적이며 세액공제 및 비과세의 축소는 부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재)미래한국재단의 2012년도 연구비 지원을 받은 “합리적인 조세부과와 조세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2012.12.)를 발췌 수정한 것이다.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imkyn@ajou.ac.kr, 주저자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hjshim@konkuk.ac.kr, 교신저자

**** 계명대학교 교수, young7@kmu.ac.kr, 공동저자

본 연구는 향후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세수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증대 효과도 추정함으로써 향후 증세에 대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주제어〉 조세부담률, 공평성, 증세

I. 서 론

세금은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의무 중의 하나이며 조세정책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해 증세 기조나 감세기조로 그 방향이 정해진다. 정부는 2008년부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고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2010년까지 실시해 오다가 2011년도부터는 감세정책을 포기하였다.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안전성과 불황 등으로 인해 그 기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내의 경기상황도 나빠지고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소득창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해 가능한 복지재정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증대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2013년 초 복지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된 것도 세계경제의 불황과 무관하지 않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세수의 증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 없는 세수증대’라는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 이에 정부는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비과세, 세액공제 및 감면의 축소 또는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자들은 ‘증세 없는 세수증대’라는 것은 결국 증세를 통한 세수증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5년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약 135조원이며, 이 중 약 48조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는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의 조정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석·백경엽(2009)은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측정만을 검증하였고 허준수(2013)는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제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증세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세율의 2%p 인상을 제안한 적은 있지만 소득과세에 대한 증세논의는 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감세정책으로 인한 조세효과가 적절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복지재원은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축

소를 통해 마련할 수도 있고 증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감세정책이 시행되기 전년도부터 감세정책이 유지된 기간 동안 변동계수비율로 측정한 수평적 공정성과 Suits 지수로 측정한 수직적 공정성을 평가한 후 감세정책으로 인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감세정책에 의해 세수 증대가 유도되지 않는다면 향후 복지재원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증세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감세정책 실시 전년도부터 감세정책이 실시된 기간 동안 소득과세에 대한 수평적 공정성과 감세정책 전·후 수직적 공정성을 측정한다. 둘째,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과세의 세수가 증대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감세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셋째, 증세가 필요할 경우 증세의 방안을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의 공정성여부는 국제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증세 여부는 OECD 각 국가의 조세부담률을 통해 판단한다. 증세의 효과는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조세부과와 조세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제Ⅱ장에서는 소득과세에 대한 공정성과 조세부담률에 대해 평가한다. 제Ⅲ장에서는 증세 실천방안별 증세효과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결론 및 한계점을 기술한다.

Ⅱ. 소득과세에 대한 공정성과 조세부담률의 평가

정부는 2008년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를 통해 감세정책을 2010년까지 유지하였고 법인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를 통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유지하였다.¹⁾ 감세정책 시행 전년도(2007년도)에 비해 감세정책이 끝나는 2010년도까지의 수평적 공정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감세정책 전·

1) 감세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2007년도		과세표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8%	6%	6%
4,0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이하	17%	16%	15%
8,0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이하	26%	25%	24%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35%	33%

후 수직적 공평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2007년도부터 2010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평성을 분석한다. 또한,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과 비교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증세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소득구간별 수평적 공평성 평가

감세정책에 의해 연도별 소득구간별 수평적 공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원석·백경엽(2009)의 연구와 같이 변동계수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자 한다.²⁾ 본 연구는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할 때 감세정책 직전년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감세정책 직전년도부터 감세정책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동일 소득구간 내에서의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규모별로 구분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한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동일 소득구간에 대한 변동계수비율이 높으면 수평적 공평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CV\ Ratio_1 = \frac{CV(TL)}{CV(EBT)} = \frac{\frac{SD(TL)}{E(TL)}}{\frac{SD(EBT)}{E(EBT)}} \quad (1)$$

$$CV\ Ratio_2 = \frac{CV(ETR)}{CV(EBT)} = \frac{\frac{SD(ETR)}{E(ETR)}}{\frac{SD(EBT)}{E(EBT)}} \quad (2)$$

여기서, CV(TL) : 조세부담액 기준의 변동계수
 CV(EBT) : 소득금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의 변동계수
 SD(TL) : 조세부담액의 표준편차
 E(TL) : 조세부담액의 평균
 SD(EBT) : 소득금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표준편차
 E(EBT) : 소득금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평균
 CV(ETR) : 유효세율 기준의 변동계수

나. 법인세 세율 구조

2007년도		과세표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과세표준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억원 이하	8%	2억원 이하	11%	11%	10%
1억원 초과	17%	2억원 초과	25%	22%	22%

2) Westort and Wagner(2002)의 연구에 의하면 변동계수는 평균소득이 증가하는 높은 소득그룹으로 갈수록 수평적 공평성을 높이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변동계수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SD(ETR) : 유효세율의 표준편차

E(ETR) : 유효세율의 평균

다만,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수평적 공정성을 측정할 경우 세전이익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신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유효세율 계산시에도 분모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한다.³⁾

가. 종합소득규모별 변동계수비율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규모별 변동계수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⁴⁾ 조세부담액 기준의 변동계수와 소득금액 기준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CVRatio_1$ 의 값을 보면 종합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3.185로 가장 높으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0.184로 가장 낮다. 그러나 세전이익 대신 소득금액으로 측정한 유효세율 기준의 변동계수를 이용한 $CVRatio_2$ 의 값을 보면 종합소득금액 5억원 초과 구간에서 0.093으로 가장 값이 낮으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종합소득규모별 변동계수비율 분석

종합소득 규모별	$CVRatio_1$	$CVRatio_2$
1천만원 이하	3.185	1.098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727	1.519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0.583	2.69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0.255	4.663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0.184	5.101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00	2.60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0.509	1.020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796	0.25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888	0.125
5억원 초과	1.039	0.093

주1) 자료출처 : 종합소득금액과 조세부담액(결정세액)은 각 연도별(2007년~2010년) 국세통계연보자료 (3-1-4)를 이용함

주2) 감세정책이 수평적 공정성에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지를 검증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국세통계연보에서 구분하고 있는 소득구간 내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소득그룹으로 간주한 것임(이하 분석에서도 같은 가정을 함)

3) 미국의 경우 과세소득을 직접 측정할 수 없기에 과세소득 대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income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자료에서 소득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세전이익보다는 소득금액을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4) 참고로 2010년도 국세통계연보는 2011년도에 공표된 자료임

이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등 여러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써 소득구간별로 유효세율 기준의 변동계수에 차이가 있어 $CVRatio_1$ 와 $CVRatio_2$ 의 값에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본다. 조세부담 기준의 변동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유효세율 기준의 변동계수를 사용할 경우 종합소득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수평적 공평성에 큰 차이가 발생되었다.

나. 근로소득규모별 변동계수비율의 분석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 규모별 변동계수비율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부담 기준의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CVRatio_1$ 의 값이 가장 높은 근로소득 구간은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며, 유효세율 기준의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CVRatio_2$ 값도 해당 구간에서 2.342로 가장 높다. 이는 근로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다른 소득 구간의 근로소득자 보다 수평적 공평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변동계수비율이 가장 낮은 소득구간은 변동계수비율의 측정방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CVRatio_2$ 로 측정한 경우 근로소득금액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계수비율이 0.206로 가장 낮으므로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자들은 감세정책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이 가장 높다.

〈표 2〉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변동계수비율 분석

근로소득 규모별	$CVRatio_1$	$CVRatio_2$
1천만원 이하	1.029	0.731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93	0.7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41	2.34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0.777	1.845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0.605	0.545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705	0.410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0.733	0.346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822	0.206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826	0.225
5억원 초과	0.826	0.484

주) 자료출처 : 근로소득규모별로 소득금액, 조세부담액(결정세액)은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를 참조함

2. 개인 소득규모별 수직적 공정성 평가

감세정책에 따른 개인 소득규모별 수직적 공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감세정책 실시되기 전년도인 2007년도와 감세정책이 종료된 2010년도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조세부담률을 기초로 수직적 공정성을 측정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수직적 공정성은 Suits 지수⁵⁾로 측정되며 Suits 지수가 클수록 수직적 공정성은 높다. 종합소득규모별 수직적 공정성 측정치를 보면 2010년도 Suits 지수 0.396으로 2007년도 Suits 지수 0.340에 비해 16.5% 상승하여 수직적 공정성의 측정치는 높아졌다. 근로소득규모별 수직적 공정성 측정치는 2007년도 0.403에서 2010년도는 11.7% 상승한 0.450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규모별 Suits 지수도 2007년도 0.063에서 2010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 81% 증가한 0.114로 나타났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규모별로 수직적 공정성이 2007년도에 비해 감세정책이 종료된 2010년도가 높아진 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라기보다 현행 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특정 구간에 대해 일정한 세율(1%~2%)을 인하하는 정책을 사용함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표 3> 개인 소득규모별 수직적 공정성

구 분	수직적 공정성(Suits 지수)		
	2007년도	2010년도	증감(율)
종합소득규모별 분석	0.340	0.396	0.056(16.5%)
근로소득규모별 분석	0.403	0.450	0.047(11.7%)
양도소득규모별 분석	0.063	0.114	0.051(81.0%)

주1) 심충진(2012), 공평과세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방안,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자료 참조

주2) Suits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소득규모별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각 연도별 각 소득규모별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은 국제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한 것임

결론적으로,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중하위 계층의 소득자가 고소득자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조세혜택을 많이 받았다. 소득세 최고세율의 구간에 대한 감세 없이 다른 소득구간에서의 세율 인하로 인해 외형상 소득세의 수직적 공정성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보다 낮은 상태에서 향후 증세를 위해서 고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증세의 재원을 고소득자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전규안(1998), 고종권(1999) 등이 사용한 방법을 이용한다.

3. 법인세의 공평성에 대한 평가

가. 연도별 소득구간별 수평적 공평성 평가

소득규모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의 소득규모별 변동계수비율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법인세부담액 기준의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CV Ratio_1$ 값이 가장 낮은 소득구간은 소득금액 10억 초과 20억원 이하이다. 유효세율 기준의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CV Ratio_2$ 값이 가장 낮은 소득금액은 5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이다. 그러나 소득금액 구간이 50억 초과 100억 이하 구간에서는 변동계수비율의 측정방법에 상관없이 변동계수비율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소득구간의 법인들은 감세정책과 무관하게 다른 소득구간 보다 수평적 공평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소득규모별 변동계수비율 분석

소득규모별	$CV Ratio_1$	$CV Ratio_2$
0원 초과 5억원 이하	0.892	1.577
5억 초과 10억 이하	0.406	0.901
10억 초과 20억 이하	0.379	1.005
20억 초과 50억 이하	0.422	1.161
50억 초과 100억 이하	1.260	2.001
100억 초과 200억 이하	0.676	1.262
200억 초과 500억 이하	1.259	1.237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0.790	0.874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	0.560	1.219
5000억 초과	1.684	1.393

주) 자료출처 : 소득규모별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법인세 신고현황)의 총부담세액과 당기순이익 자료를 이용하여 총부담세액에서 당기순이익을 가산하여 법인세차감 전순이익을 산출한 측정치임

나. 수직적 공평성 평가

감세정책 직전년도인 2007년도에 비해 감세정책이 마무리되는 2010년도의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기준으로 측정한 Suits 지수를 보면, 2007년도 0.048에서 2010년도는 29% 증가한 0.0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p의 법인세율 인하에도 그 원인이 있다.

〈표 5〉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정성 분석

구 분	2007년도	2010년도	증감(율)
조세부담률(결정세액/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적용시 : 수직적 공정성(Suits 지수)	0.048	0.062	0.014(29%)

주1) 심충진(2012), 공평과세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방안,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자료 참조

주2) Suits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연도별 소득규모별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며, 각 연도별 각 소득규모별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한 것임.

다. 소결

법인세 세율 체계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2단계 세율 구조가 적용되지만 1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1단계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각 소득규모별 변동계수비율의 크기에 큰 차이가 없다.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보다 적고 세율구조가 단순해 법인세의 수직적 공정성 지수는 소득세의 수직적 공정성 지수보다 상당히 낮다. 향후 증세의 재원으로 법인세의 세율 체계를 조정할 경우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4. 현행 조세부담률을 통한 시사점

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현황

2010년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1,173조 2,750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6.3% 성장하였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을 보면 1분기 268조원, 2분기 294조원, 3분기 297조원, 4분기 313조원이다.

〈표 6〉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현황

(단위 : 십억원, 전년동기비 %)

구 분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2010년 3분기	2010년 4분기	2010년도
국내총생산 (GDP)	268,010	294,138	297,486	313,641	1,173,275
성장률	8.7	7.6	4.5	4.9	6.3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자료 참조.

나. 우리나라 조세수입 현황

연도별 세수 실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세 세수는 각각 31조원, 38조원, 36조원, 34조원, 37조원이며, 같은 기간 법인세 세수는 각각 29조원, 35조원, 39조원, 35조원, 37조원이다. 내국세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비중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세는 각각 27.23%, 29.32%, 26.62%, 25.22%, 26.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각각 25.78%, 26.73%, 28.67%, 25.83%, 25.9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내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표 7〉 연도별 세수 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소득세	금액	31,004,340	38,855,971	36,355,129	34,423,256	37,461,850
	비율	27.23	29.32	26.62	25.22	26.10
법인세	금액	29,362,229	35,417,342	39,154,491	35,251,404	37,268,222
	비율	25.78	26.73	28.67	25.83	25.97
내국세	총금액	113,879,497	132,508,138	136,556,310	136,476,881	143,506,090

주)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 참조

다. 조세부담률에 대한 시사점

2010년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3%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24.6%보다 5.3%p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2010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1%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33.8%보다 8.7%p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조세부담률은 재정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재정지출을 증대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1%에서 3%까지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세수 증대 효과를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된 세수 증가액을 소득과세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라. 감세 논의에 대한 소결

2008년도 소득세의 세수는 36조 3,551억원이며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이 반영된 후 2009년도 소득세의 세수는 34조 4,232억원으로 낮아졌다. 법인세의 세수 또한 2008년도 39조 1,544억원에서 2009년도 35조 2,514억원으로 낮아졌다. 2008년도 내국세 전체 세수는 136조 5,563억원이며 2009년도 내국세 전체 세수는 136조 4,768억원으로 약간 낮아졌다.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8년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7%이지만 2009년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7%로 1.0%p 낮아졌다. 정부는 세율의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실물경기를 확대시킴으로써 매출증대를 통해 이익창출과 세수의 증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 경기 등의 요인에 의해 세율의 인하가 세수의 증대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세의 감세정책은 실질적으로 세수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보며 현재 감세정책이 투자의 증대나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인해 각 국가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국가 경제 성장이 어려울수록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새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재원은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세정책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증세 실천방안별 증세효과를 추정한다.

III. 합리적 증세 실천방안별 효과 분석

2008년부터 시작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2010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조세부담률(19.3%)은 OECD 국가 평균(24.6%) 보다 5.3%p 낮은 수준이며 국민부담률(25.1%)은 OECD 국가 평균(33.8%)보다 8.7%p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조세부담률은 복지재원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납세자에게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부담률을 1%p에서 점진적으로 3%p까지 증가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⁶⁾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제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허준수, 2013). 최근 조세연구원은 부가치세를 10%에서 12%로 올리자고 제안한 바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소득과세의 증세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증세가 가능한 모든 세목을 다루지 않고 과거 감세정책의 중심이 소득과세였기에 증세의 대상도 소득과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6) 조세부담률을 3%이상 높일 경우 기업이나 개인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1. 조세부담률 증가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가. 조세부담률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액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1,173조 2,750억원이며, 조세부담률을 1%p, 1.5%p, 2%p, 2.5%p, 3%p로 각각 증가하는 경우 세수 증가 효과는 조세부담률 증가에 따라 각각 약 11조 7천억원, 약 17조 5천억원, 약 23조 4천억원, 약 29조 3천억원, 약 35조 1천억원이다.

〈표 8〉 조세부담률 증가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단위 : 십억원)

① 조세부담률 증가	1.0%p	1.5%p	2.0%p	2.5%p	3.0%p
② 2010년도 GDP	1,173,275	1,173,275	1,173,275	1,173,275	1,173,275
③ 세수증대 효과(①×②)	11,733	17,599	23,466	29,332	35,198

주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주2)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은 1,173조 2,750억원임

나. 세수증대 금액이 내국세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0%p에서 3.0%p까지 조세부담률을 증가할 경우 내국세 및 국세에 대한 조세부담이 높아져 국민의 납세저항이 높아진다. 따라서 점진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를 통해 세부담의 증가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표 9〉 조세부담률 증가시 세수증대가 내국세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0년도 기준 금액	조세부담률 증가	1%p	1.5%p	2%p	2.5%p	3%p
		① 세수 증대	11,733	17,599	23,466	29,332	35,198
내국세	② 143,506	①/②	8.18	12.26	16.35	20.44	24.53
국 세	③ 166,014	①/③	7.07	10.60	14.13	17.67	21.20

주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주2) 2010년 기준자료이며 국세 중 관세청 소관분(관세, 농어촌특별세)과 지방자치단체 소관분(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은 제외함.

2. 조세부담률 증가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액

가. 조세부담률 증가시 세수증대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10>에 의하면 2010년도 소득세 세수는 37조 4천억원이며, 법인세 세수는 37조 2천억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1%p 증가하는 경우 약 11조 7천억원의 세수확보가 요구되며, 이는 2010년도 기준 소득세의 31.32%, 법인세의 31.48%에 해당된다. 조세부담률이 1.5%p 증가하는 경우 약 17조 5천억원의 세수확보가 요구되며, 이는 2010년도 소득세의 46.98%, 법인세의 47.22%에 해당된다. 조세부담률이 2%p 증가하는 경우 약 23조 4천억원의 세수확보가 요구되며, 이는 2010년도 소득세의 62.64%, 법인세의 62.9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조세부담률이 2.5%p 증가하는 경우 23조 4천억원의 세수확보가 요구되며, 이는 2010년도 기준 소득세의 78.30%와 법인세의 78.71% 비중이다. 또한 조세부담률이 3%p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할 세수는 35조 1천억원이며, 이는 2010년도 기준 소득세의 93.96%와 법인세의 94.45% 비중에 해당된다. 따라서 2.5% 이상의 조세부담률이 증가되는 경우 현행 개인 및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부담액에 추가로 7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현실적으로 과도한 조세부담률 증대는 어렵다고 본다.

<표 10> 조세부담률 증가시 세수증대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0년도 기준 금액	조세부담률 증가	1%p	1.5%p	2%p	2.5%p	3%p
		① 세수 증대	11,733	17,599	23,466	29,332	35,198
소득세	② 37,461	①/②	31.32	46.98	62.64	78.30	93.96
법인세	③ 37,268	①/③	31.48	47.22	62.96	78.71	94.45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나. 분배방법

<표 11>에 의하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내국세 중 소득세의 비중은 26.10%이며, 법인세의 비중은 25.97%이다. 2010년도 소득세와 법인세 중 소득세 비중은 50.12%이며, 법인세는 49.88%이다. 2009년부터 2010년간 최근 2년간 내국세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내국세 중 소득세 비중은 25.66%이며, 법인세 비중은 25.90%이다. 따라서 최근 2년간 평균 조세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중 소득세 비중은 49.77%이며, 법인세 비중은 50.23%이다. 2010년도 기준이나 최근 2년간 세수를 기준으로 하나 각각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

〈표 11〉 내국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

(단위 : %)

구 분	내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 비중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법인세)	(소득세+법인세)
2010년도	26.10	25.97	50.12	49.88
최근 2년 평균	25.66	25.90	49.77	50.23

주)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 참조.

<표 12>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 3년간 가중평균을 이용한 소득세 및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내국세 중 소득세의 비율은 25.89%이며 법인세는 26.37%이다.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 중 소득세의 비중은 49.54%이며, 법인세는 50.46%이다.

〈표 12〉 과거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가중평균을 이용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

(단위 : %)

구 분	내국세 중 소득세 및 법인세 비중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법인세)	(소득세+법인세)
2010년도	25.89	26.37	49.54	50.46

주)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 참조

다. 조세부담률 증가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액

조세부담률을 1.0%p에서부터 3.0%p까지 증가할 경우 증가되는 세수는 최소 약 11조 7천억원에서 최대 약 35조 1천억원이다. 따라서 증가되는 세수를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담시킬 경우 분배율을 결정해야 된다. 각각의 분배율에 따라 분배한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첫째, 2010년 내국세에 대한 비중을 기준으로 조세증가액을 배부한다. 이로 인해 조세부담률을 1%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는 약 5조 8,810억원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는 약 5조 8,520억원 증액되어야 한다. 조세부담률을 1.5%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는 8조 8천억원이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는 8조 7천억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조세부담률을 2.0%p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소득세 11조 7,620억원과 법인세 11조 7,030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야 한다. 조세부담률을 2.5%p, 3.0%p까지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는 각각 14조 7천억원과 17조 6천억원이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는 14조 6천억원과 17조 5천억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둘째, 내국세에 대한 최근 2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조세증가액을 배부한다. 이에 근거하여 조세부담률을 1%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는 약 5조 8,390억원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도 약 5조 8,940억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1.5%p의 조세를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 8조 7

천억원과 법인세 8조 8천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야 하며, 조세부담률을 2.0%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 11조 6천억원과 법인세 11조 7천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야 한다. 조세부담률을 2.5%p~3.0%p까지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는 각각 14조 5천억원과 17조 5천억원이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는 14조 7천억원과 17조 6천억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3년간 내국세에 대한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조세증가액을 배부한다. 이로 인해 조세부담률을 1.0%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는 약 5조 8천억원 증액되고 법인세는 약 5조 9천억원 증액되어야 한다. 조세부담률을 1.5%p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소득세 8조 7천억원과 법인세 8조 8천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야 하며, 조세부담률을 2%p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소득세 11조 6천억원과 법인세 11조 8천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야 한다. 조세부담률을 2.5%p, 3%p까지 증액하는 경우 소득세는 각각 14조 5천억원과 17조 4천억원이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는 14조 8천억원과 17조 7천억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표 13〉 조세부담률 증가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의 조세부담액

(단위 : 십억원, %)

구 분		증가율	1.0%p	1.5%p	2.0%p	2.5%p	3.0%p
		분배율(%)					
2010년도 기준	소득세	50.12	5,881	8,822	11,762	14,703	17,643
	법인세	49.88	5,852	8,778	11,703	14,629	17,555
	소 계		11,733	17,599	23,466	29,332	35,198
2년 평균 기준	소득세	49.77	5,839	8,759	11,678	14,598	17,517
	법인세	50.23	5,894	8,841	11,787	14,734	17,681
	소 계		11,733	17,599	23,466	29,332	35,198
가중평균 기준	소득세	49.54	5,813	8,719	11,625	14,531	17,438
	법인세	50.46	5,920	8,880	11,840	14,801	17,761
	소 계		11,733	17,599	23,466	29,332	35,198

주1) 소득세 및 법인세 분배율은 국세청, 2011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계산함

주2) 분배금액은 한국은행의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계산함

3. 개인소득세의 합리적 증세 실천방안

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만 조정하는 방안

증세의 부담을 가급적 고소득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조세의 수직적 공정성은 높아진다. 국세 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현행 8,800만원 이하 납세자 수는

20,917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납세자 수는 21,000명, 3억원 초과 납세자 수는 23,391명이다. 납세자 수가 많은 과세표준 구간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7) 중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구간을 4,6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그 이후의 구간을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로 조정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만 조정하는 방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기 본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398만원 + (과세표준 - 8,000만원) × 35%
2억원 초과	5,598만원 + (과세표준 - 2억원) × 38%

변경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이용하여 1인당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납세자의 수를 고려한 산출세액 총계를 계산하면 연간 약 15조 1,877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2010년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14조 8,443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증가되는 세수는 약 3,434억원 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은 <표 15>와 같다.

〈표 15〉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만 조정하는 경우 세수효과 분석

(단위 : 명, 백만원)

과세표준 구 간	납세자 (A)	과세표준 총 액 (B)	1인당 평균 과세표준 (C=B/A)	1인당 산출세액 (D)	산출세액 총 계 (E=D×A)
1천만원 이하	1,793,172	6,426,663	4	0.22	385,600
1.2천만원 이하	138,601	1,521,453	11	1	91,287
3천만원 이하	560,598	10,647,123	19	2	991,623

7)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3억원 초과	9,01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38%

〈표 15〉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만 조정하는 경우 세수효과 분석 (계속)

과세표준 구 간	납세자 (A)	과세표준 총 액 (B)	1인당 평균 과세표준 (C=B/A)	1인당 산출세액 (D)	산출세액 총 계 (E=D×A)
4천만원 이하	129,532	4,488,353	35	4	533,358
4.6천만원 이하	58,273	2,500,816	43	5	312,188
6천만원 이하	93,402	4,894,507	52	4	373,293
7천만원 이하	43,675	2,828,782	65	7	304,176
8천만원 이하	32,532	2,433,369	75	9	304,884
8.8천만원 이하	20,917	1,754,953	84	15	320,977
1억원 이하	24,775	2,322,117	94	19	465,395
2억원 이하	81,316	11,132,604	137	34	2,756,361
3억원 이하	21,000	5,075,058	242	72	1,508,102
5억원 이하	12,697	4,805,940	379	124	1,572,063
10억원 이하	7,097	4,843,628	682	239	1,698,497
10억원 초과	3,597	9,584,074	2,664	992	3,569,936
소 계			15,187,740		
2010년도 소득세			14,844,300		
세수증대 효과			343,440		

주) 납세자 수, 과세표준 총액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함

나. 고소득자의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현행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38%를 적용할 경우 3억원 이하일 때 보다 3%p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9%p 증가폭을 유지할 경우 초과누진세율 구조는 현행보다 강화되고 세수증대도 발생되므로 세율 증가 폭을 9%p로 하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⁸⁾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 중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현행 35% 적용세율을 33%로 인하하고,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적용세율 38%를 42%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대한 각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2007년도, 2008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증가에 따른 세율 증가 폭은 9%p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16〉 고소득자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기 본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3%
3억원 초과	8,58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2%

세율 조정을 한 결과,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서의 산출세액은 약 11조 5천억원이다.

2010년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14조 8,334억원이었으며, 이중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산출세액은 약 10조 6천억원이었다. 따라서 현행 35%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적용세율을 33%로 인하하고, 38%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적용세율을 42%로 인상하는 경우 약 9,08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난다.

〈표 17〉 고소득자 세율만 조정할 경우 세수효과 분석

(단위 : 명, 백만원)

과세표준 구 간	납세자 (A)	과세표준 총 액 (B)	1인당 평균 과세표준 (C=B/A)	1인당 산출세액 (D)	산출세액 총 계 (E=D×A)
8,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4,775	2,322,117	94	18	440,755
2억원 이하	81,316	11,132,604	137	32	2,605,267
3억원 이하	21,000	5,075,058	242	67	1,398,829
5억원 이하	12,697	4,805,940	379	119	1,508,837
10억원 이하	7,097	4,843,628	682	247	1,749,450
10억원 초과	3,597	9,584,074	2,664	1,079	3,880,928
소 계			11,584,066		
2010년도 소득세 ^{주1)}			10,676,000		
세수증대 효과			908,000		

주1) 2010년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14조 8,443억원이었으며, 이 중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산출세액 합계액은 10조 6,760억원임

주2) 납세자, 과세표준 총액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함

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과세표준 구간의 일부에 대한 세율 조정을 통해 조세부담률 인상에 대한 세수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즉, 조세부담률을 1%p에서 3%p까지 인상하는 경우 세수증가액은 최소 5조 8천억원에서 최대 17조 6천억원 인데, 과세표준 일부 구간에 대한 세율 변경을 통해 증가되는 세수효과는 9천억원에 불과하다. 향후 부족한 복지재원 등의 세원을 소득과세에서 확보할 경우 최대 과세표준과 세율구간을 조정할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규모를 추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과세구간에 대한 적용세율을 아래 <표 18>과 같이 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경우 20%를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0%를 적용하며,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표 18>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모두 조정하는 방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기 본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1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20만원+(과세표준-1,200만원)×2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00만원+(과세표준-4,600만원)×30%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60만원+(과세표준-8,800만원)×40%
3억원 초과	10,540만원+(과세표준-3억원)×50%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최소 6%에서 최대 38%의 적용세율에 대하여 10%에서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21조 6천억원이다. 2010년 기준 현행 세율에 의해 계산된 산출세액이 14조 8천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소득세율을 10%에서 50%로 조정하는 경우 증가되는 세수는 약 6조 7,946억원이 된다.

<표 19>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모두 조정할 경우 세수효과 분석

(단위 : 명, 백만원)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총액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추정 산출세액	산출세액 총계
	인원	금액			
1천만원 이하	1,793,172	6,426,663	4	0.36	642,666
1.2천만원 이하	138,601	1,521,453	11	1	152,145
3천만원 이하	560,598	10,647,123	19	5	2,667,599

〈표 19〉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모두 조정할 경우 세수효과 분석 (계속)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총액		1인당 평균 과세표준	1인당 추정 산출세액	산출세액 총계
	인원	금액			
4천만원 이하	129,532	4,488,353	35	8	1,022,021
4.6천만원 이하	58,273	2,500,816	43	10	556,105
6천만원 이하	93,402	4,894,507	52	10	926,621
7천만원 이하	43,675	2,828,782	65	14	595,320
8천만원 이하	32,532	2,433,369	75	17	541,325
8.8천만원 이하	20,917	1,754,953	84	19	405,167
1억원 이하	24,775	2,322,117	94	23	567,132
2억원 이하	81,316	11,132,604	137	40	3,265,828
3억원 이하	21,000	5,075,058	242	82	1,723,423
5억원 이하	12,697	4,805,940	379	145	1,836,684
10억원 이하	7,097	4,843,628	682	297	2,105,288
10억원 초과	3,597	9,584,074	2,664	1,288	4,631,611
소 계		21,638,935			
2010년도 소득세		14,844,300			
세수증대 효과		6,794,635			

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축소 방안

〈표 20〉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세액공제액은 각각 9,808억원, 1조 627억원, 9,462억원, 1조 1,404억원이며, 세액감면은 각 연도별로 4,270억원, 4,657억원, 4,555억원, 5,282억원 정도의 규모이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한 조세 경감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1조 4,079억원, 1조 5,285억원, 1조 4,018억원, 1조 6,687억원 정도의 수준이다.

〈표 20〉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모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세액공제	세액감면	합 계
2007년	980,862	427,052	1,407,914
2008년	1,062,765	465,740	1,528,505
2009년	946,281	455,592	1,401,873
2010년	1,140,476	528,249	1,668,725

주)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표 21>에 의하면 2010년도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조세부담률을 1%p 증가하는 경우 증세되어야 하는 소득세는 약 5조 8천억원이다. 해당금액 중 세액공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이며, 해당금액 중 세액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9.1%,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28.7%이다. 따라서 확보해야 될 세수를 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축소를 통해 전부 달성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 10%를 축소할 경우 확보 가능한 세수는 1,668억원 정도된다.

특히 조세부담률을 3%p 증가하는 경우 증세되어야 할 최대 소득세는 17조 6천억원이다. 해당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모두 축소해도 확보해야 될 세원의 9.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행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조정하여 조세부담률 증가에 대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고려한다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축소를 최대 10%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이다.

<표 21>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축소를 확보 가능한 세수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도 기준		
	③ 세액공제 1,140,476	④ 세액감면 528,249	⑤ 소 계 1,668,725
① 조세부담률 1%p 증가시 필요한 세수확보 최소금액 5,813,000	19.6 (③/①)	9.1 (④/①)	28.7 (⑤/①)
② 조세부담률 3%p 증가시 필요한 세수확보 최대금액 17,643,000	6.5 (③/②)	3.0 (④/②)	9.5 (⑤/②)

마. 소결

소득세의 합리적인 증세방법으로 현행 과세표준 구간 조정방안, 세율 조정방안,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세액공제 및 감면축소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로 세수효과를 산출하였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두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법인세의 합리적 증세 실천방안

현행 법인세법상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22%로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⁹⁾ 법인세 증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 세율 조정 방안

2010년도 기준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817 기업이다. 이는 전체 신고 법인 수 440,023에 비해 적지만 절대적인 기업 수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세율을 조정하여 수직적 공평성도 높이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다. 현행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세율을 22%에서 30%로 조정하는 경우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0%p 씩 증가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 22〉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

과 세 표 준	적 용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만원+(과세표준-2억원)×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과세표준-200억원)×30%

위 <표 22>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은 32조 7,301억원이다. 2010년도 기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산출세액이 25조 2,379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세율을 30%로 조정함으로써 증가되는 세수효과는 7조 4,922억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3>와 같다.

〈표 23〉 법인세 세율 조정에 대한 세수효과 분석

(단위 : 명, 백만원)

과세표준 구 간	법인 수 (A)	과세표준 총 액 (B)	기업당 평균 과세표준 (C=B/A)	기업당 평균 산출세액 (D)	산출세액 총 계 (E=D×A)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53	14,063,682	31,046	7,294	3,304,045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65	11,632,420	70,500	19,130	3,156,426
1,0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	157	33,280,052	211,975	61,572	9,666,876
5,000억원 초과	42	55,625,569	1,324,418	395,305	16,602,831

9)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 세 표 준	적 용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만원+(과세표준-2억원)×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과세표준-200억원)×22%

〈표 23〉 법인세 세율 조정에 대한 세수효과 분석 (계속)

과세표준 구 간	법인 수 (A)	과세표준 총 액 (B)	기업당 평균 과세표준 (C=B/A)	기업당 평균 산출세액 (D)	산출세액 총 계 (E=D×A)
소 계			32,730,177		
2010년도 법인세			25,237,900		
세수증대 효과			7,492,200		

- 주1)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조정한 결과임.
 주2) 2010년도 기준 법인세 산출세액 총액은 36조 9,215억원이며, 이 중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산출세액은 25조 2,379억원 임
 주3) 납세자 수와 과세표준 총액은 국세통계연보를 참조함

나.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 방안

현행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만을 조정함으로써 조세부담률의 증가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적용세율을 함께 조정하여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가 전체 신고 법인 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으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가 전체에서 약 1%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납세자 수가 2,075개 기업이며,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 수는 817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 초과로 하면 그 적용 대상 기업 수가 2,075개 증가하여 현행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 817개를 포함하여 2,892개가 되어도 이는 전체 신고 법인 수(440,023개) 중 0.657% 밖에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 24>와 같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적용세율은 10%로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적용세율은 20%로 한다. 그리고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적용세율은 30%로 조정한다. 최고세율을 30%로 하더라도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표 24〉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 방안

과 세 표 준	적 용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0%
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000만원+(과세표준-2억원)×20%
50억원 초과	8,000만원+(과세표준-50억원)×30%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을 통해 계산된 산출세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당 평균 산출세액을 추정하면 약 43조 800억원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2010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36조 9,215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약 6조 1,585억원의 법인세 증가액이 발생하게 된다.

<표 25>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세수효과
(단위 : 명, 백만원)

과세표준 구간	기업 수	과세표준 총액	기업당 평균 과세표준	기업당 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1억원 이하	150,775	4,932,483	33	3	493,248
2억원 이하	34,219	4,906,473	143	14	490,647
5억원 이하	28,341	8,747,085	309	42	1,182,597
10억원 이하	10,395	7,236,618	696	119	1,239,424
20억원 이하	5,472	7,637,768	1,396	259	1,418,114
50억원 이하	3,635	11,156,382	3,069	594	2,158,576
100억원 이하	1,356	9,384,062	6,920	656	889,699
200억원 이하	719	10,028,094	13,947	2,764	1,987,448
500억원 이하	453	14,063,682	31,046	7,894	3,575,845
1,000억원 이하	165	11,632,420	70,500	19,730	3,255,426
5,000억원 이하	157	33,280,052	211,975	62,172	9,761,076
5,000억원 초과	42	55,625,569	1,324,418	395,905	16,628,031
소 계			43,080,130		
2010년도 법인세			36,921,500		
세수증대 효과			6,158,500		

주) 기업 수와 과세표준 총액은 국세통계연보를 참조함

다. 법인세 세액공제 축소 방안

연도별 법인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12만 4천개 기업, 13만 3천개 기업, 13만 8천개 기업, 14만 8천개 기업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액공제 총액을 보면 각 연도별로 5조 5,885억원, 6조 6,6987억원, 7조 1,383억원, 7조 4,014억원으로 세액공제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의 기업 조세부담 완화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을 1%p에서부터 3%p까지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최소 11조 7천억원에서 최대

35조 1천억원의 조세수입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통해 세수를 증대할 경우 분배율에 의해 법인세 세수확대 규모는 최소 5조 8천억원에서 최대 17조 7천억원이다. <표 26>에서 보듯이 세액공제 규모 중 10%를 축소할 경우 7,401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으로는 조세부담률을 1%p도 증가시킬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세액공제의 축소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표 26> 법인세의 연도별 세액공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기업 수	금 액
2007년	124,412	5,588,501
2008년	133,107	6,698,784
2009년	138,624	7,148,344
2010년	148,592	7,401,440

주)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라. 법인세 비과세소득 축소 방안

연도별 과세표준 및 비과세소득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표준은 각각 147조 7천억원, 181조 5천억원, 177조 8천억원, 178조 6천억원이며, 각 연도별 비과세소득은 4천억원, 5천억원, 3천억원, 2천억원 정도이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중 비과세소득의 비중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0.32%, 0.32%, 0.20%, 0.15%로 매우 낮다.

비과세소득의 10%를 축소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세율 22% 적용시)는 약 60억원 정도로 낮으므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모 축소를 통한 세수 확대방안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27> 법인세의 연도별 과세표준 및 비과세소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세표준	비과세소득	비율(%)
2007년	147,763,536	470,430	0.3184
2008년	181,554,846	581,694	0.3204
2009년	177,877,986	347,727	0.1955
2010년	178,630,688	275,766	0.1544

주)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마. 법인세 세액감면 축소 방안

연도별 세액감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107,377개 기업이며 일반기업은 1,062개 기업이다. 2010년 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131,922개 기업이며 일반기업은 1,234개 기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세액감면액 규모를 보면 2007년도 중소기업은 1조 210억원이며 일반기업은 4,558억원이다. 2010년도 세액감면규모를 보면 중소기업은 1조 636억원이며 일반기업은 7,794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표 28〉 연도별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기업수	세액감면	기업수	세액감면
2007년	107,377	1,021,030	1,062	455,834
2008년	117,225	1,226,984	1,093	582,624
2009년	123,285	1,181,571	1,137	819,142
2010년	131,922	1,063,657	1,234	779,400

주)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2010년도 세액감면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2010년도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액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이 각각 9,441억원, 310억원이며, 최저한세 적용 제외 세액감면액은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이 각각 1,194억원과 7,483억원이다. 따라서 현행 세액감면액에 대하여 10%를 축소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액 중 약 975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감면액 중 약 867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세액감면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세액감면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공장 및 본사 이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그리고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 촉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법인세 세액감면 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	944,178	31,076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8,369	—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37,48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770,890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2,275	—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	30,40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596	—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	—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주식 양도차익 세액감면	—	26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41,129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9,177	—
농업회사법인 감면	2,903	6
산림개발소득 감면	—	—
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	—	—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감면	—	—
기타	353	640
최저한세 적용 제외 세액감면	119,479	748,324
해외 자원개발 투자배당 감면	—	19,968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	13,021	—
수도권 외 지역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	6,375	44,479
수도권 외 지역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62,290	118,836
영농조합법인 감면	18,431	1,529
영어조합법인 감면	1,453	76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7,599	137,252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세액감면	665	70,331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6,587	352,83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외국법인지점)	23	1,70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	—
기타	3,035	1,315
합 계	1,063,657	779,400

주) 국세청, 2011년도 국세통계연보 참조

바. 소결

법인세의 합리적 증세 실천방안으로 세율의 조정방안,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의 조정방안, 세액 공제, 비과세소득 및 세액감면의 축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실천방안별로 세수증대 효과도 제시하였다. 법인세 증세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조정이 필수적이며, 세액공제, 비과세소득 및 세액감면의 축소는 부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IV. 결 론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시행된 감세정책에 대한 효과를 공평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감세정책의 효과를 세수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향후 증세 없이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세정책 이전년도에 비해 감세정책이 종료되는 년도까지 수평적 공평성과 감세정책 전·후의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실적을 분석하고 소득과세를 통해 증세를 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공평성을 측정하고 조세부담률의 증가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규모별 변동계수비율을 보면, 종합소득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소득과 공제가 거의 없는 금융소득 등이 혼합되어 있어서 변동계수비율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소득 규모별 수평적 공평성은 측정방법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세정책 전년도와 감세정책 후 수직적 공평성의 측정값을 보면, 세율 인하를 통해 감세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의 *Suits* 지수는 증가하였다. 법인소득규모별 변동계수비율은 측정방법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50억 초과 100억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2008년부터 시작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보다 낮은 수준에서 복지재원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과세의 증세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조세부담의 증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담시킬 수 있는 분배방법으로 내국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을 기준으로 조세부담액을 안분한다. 조세부담률을 1%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는 약 5조 8,810억원 증액되어야 하며, 법인세는 약 5조 8,520억원 증액되어야 한다. 조세부담률을 2.0%p 증가시키는 경우 소득세 11조 7,620억원과 법인세 11조 7,030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3,434억원이며, 고소득자의 세율만 조정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9,080억원이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모두 조정할 경우 증가되는 세수효과는 약 6조 7,946억원이다. 현실적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 10%를 축소할 경우 확보 가능한 세수는 1,668억원이다. 최선의 소득세 증세방법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

두 조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법인세 증세 실천방안으로 세율의 조정방안,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의 조정방안, 세액공제 및 비과세의 축소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7조 4,922억원이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 방안을 모두 적용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는 약 6조 1,585억원의 법인세 증가액이 발생하게 된다. 세액공제 규모 중 10%를 축소할 경우 7,401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의 10%를 축소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세율 22% 적용시)는 약 60억원 정도로 낮다. 법인세 증세 방안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의 조정이 필수적이며, 세액공제 및 비과세의 축소는 부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경우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세수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세수증대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향후 증세에 대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을 통해 증세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각 국가 간의 조세특성을 완전히 조정하지 않았다. 증세의 재원으로 소득과세만을 분석함으로써 재산과세 및 소비과세까지 포함하지 않은 점과 수평적 공정성을 측정할 때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그룹을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 고종권. 1999. “세율인하와 세법변경에 따른 과세공평성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14권 : 109-139.
- 국세청. 2011. 『국세통계연보』.
- 김광윤 · 심충진 · 이영환. 2012. “합리적인 조세부과와 조세의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미래한국재단.
- 박춘래 · 장호영. 1994. “최저한세제도의 과세공평성 향상분석”. 회계학연구 제19호 : 275-297.
- 심충진. 2012. “공평과세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방안”.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
- 전규안. 1998. “조세부담의 공평성 분석”. 세무학연구 제11호 : 7-41.
- 최원석 · 백경엽. 2009. “법인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측정에 대한 재검토”.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37-168.
- 한국은행. 2012.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허준수. 2013.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9-38.
- Westort, P. J., and J. M. Wagner. 2002. Toward a Better Measure of Horizontal Equit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4(Spring) : 17-28.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Income Taxation Fairness and Rational Methods for Tax Increase

Kwang-Yoon Kim* · Chung-Jin Shim** · Young-Hwan Lee***

〈Abstract〉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exerting itself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in order to realize its welfare pledge. Accordingly, this study has reviewed the tax burden ratio among OECD members to suggest the grounds for the argument on tax increase and has evaluated the fairness of taxation for the suggestion of rational methods for tax increase with the focus on income taxation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We use National Tax Service annual statistics to analyze the equity of taxation. The plan of tax increase will be decided by comparison with the tax burden ratio among OECD countries. We analyze the effect of tax increase in view of income taxation.

The increase of tax burden ratio in Korea needs an approach from the long-term viewpoint and its sharp increase is not desirable since the tax payers feel a relatively much tax burden if the increase should be higher than the rate of economic growth. A method of distribution able to make both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considering the burden of tax increase is desirable to distribute proportionally the tax burden ratio by the ratio of the two over domestic taxes. With the increase of 1%p of the tax burden ratio, there should be 5,881 billion won increase of income tax and 5,852 billion won increase of corporate tax.

In case of adjusting the section of assessment standard of general income tax, the result of tax revenue income is about 343.4 billion won and in case of adjusting only the tax rate of high-income earners it will be around 908 billion won. If both of the two are adjusted, it will be 6,794.6 billion won. Realistically, when there is 10% of reduction at tax deduction and exemption, the tax revenue to be secured will amount to 166.8 billion won. The best method for increasing in income tax is to adjust both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

When there is a raise of corporate tax rate in the method of practicing the increase of corporate tax, the increase of tax revenue will be 7,492.2 billion won and when both section of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 are adjusted there will be the 6,158.5 billion won increase of corporate tax. 10% reduction of tax exemption will result in securing the tax revenue of 740.1 billion won. If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jou Univers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there is 10% reduction of non-taxable income, the effect of tax revenue increase (in case of applying 22% of tax rate) is relatively low with 6 billion won. It is indispensable to adjust the section of assessment standard and tax rate for the method of increasing corporate tax, and the tax deduction and cut of non-taxation can be utilized for simultaneous approach.

This study can play the role of fundamental data in the future when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assessment standard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and the tax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ax increase can be utilized in the future by suggesting methods of tax revenue increase and assuming their effect.

<Key words> tax burden ratio, the fairness of taxation, tax revenue increase